

의안번호	54
------	----

제목 : 대전 도시계획시설 (고속국도) 결정

제출년월일 : 1991. 12. 6.

제 출 자 : 대전직할시장

## □ 제 안 이 유

- 대전 도시계획구역내 정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도시계획부칙 2항의 규정에 의거 72. 12. 30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
- 88. 3. 11. 충남고시 제41호에 의거 대덕군 관내 일부만을 지적고시하였으나 지적승인 조서상 도로등급 및 폭원 기입 누락으로 사실상 효력이 없어 이를 바로 잡고
- 또한 대전 도시계획구역내 고속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확장에 대비코자 하며
- 특히 대전 세계박람회장 진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회덕J.C의 개량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
-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결정“안”을,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것임.

## □ 추진경위

- 72. 12. 30 : 도시계획법 부칙 2항 (경과조치)
  -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  
- 73. 11. 30 : 도시계획 시설결정 (건설부고시 제468호)
  - 경부고속도로 (변경결정) : 22.4m → 50m
  - 호남고속도로 (신규결정) : 50m
  
- 86. 9. 22 : 대전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 (건설부고시 422호)
  - 경부, 호남고속도로는 법부칙(72. 12. 30)에 의거 지적고시 확정 지시
  - ※ 경부, 호남고속도로의 구역결정이 없으므로 지적 미고시
- 88. 3. 11. : 대전 도시계획 지적승인 일부구간 (충남고시 41호)
  - 경부고속도로 B = 미결정 (도면상 50m)  
L = 9,506m
  - 호남고속도로 B = 미결정  
L = 5,325m
  
- 91. 10. 5 : 신청서 접수 (한국도로공사 충청지사 → 시)
  
- 91. 10. 17 : 해당부서 협의 (충남도청, 녹지과)
  
- 91. 11. 29 : 공람 공고

□ 주요 골자

○ 경부고속도로 L = 19.2km  
B = 50m

○ 호남고속도로 L = 22.1km  
B = 50m

□ 도시계획시설(고속국도) 결정조서 및 사유서

구분	규 모				사용형태	연 장 (km)	기 점	종 점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
신설 (기존)	광로	2	15	50m	자 동 차 전용도로 (경 부 선)	19.2	대덕구 문평동	동 구 신상동 시구역계	한국도로청 사에 시설결 요청
기정 ( )	대로	3	1	25m	" ( )	0.834	공 동 경 원 측 경 계	공 원 남 측 경 계	"
변경 ( )	"	3	40	25m	" ( " )	1.138	대덕구 상서동 210-11	대덕구 상서동 387-2	기존 고속 도로와 연결결정
신설 (기존)	광로	2	16	50m ~ 110m	" (호 남 선)	22.1	대덕구 신대동	서 구 원정동 시구역계	한국도로청 사에 시설결 요청

